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실 주소 * 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시·도별 계약능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5.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이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법인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회사·법인명을 적고,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3.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전화를 통해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주 사업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6.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법인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담당자의 사무실 주소는 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